



일동 구룡경로당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3. 1.

안산시
도시개발과

- 목 차 -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1. 과업명칭	1
2. 과업개요	1
3. 과업기간	2
4. 과업범위	2
5. 과업준수사항	3
6. 법령 등의 적용	7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7
8. 계약의 해지	7
9. 대가의 조정	8
제2장 분야별 설계	8
1. 설계의 기본방향	8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항	10
3.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11
4. 건축분야	13
5. 설비분야	16
6. 토목·조경분야	17
7. 전기분야	18
8. 통신분야	19
제3장 설계 진행사항	20
1. 설계도서 작성	20
2.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21
3. 설계도서 납품목록	21
[서식1] 보안각서	24
[서식2] 월간업무보고	25
[서식3] 책임기술자선임계	26
[서식4] 설계공정예정공정표(예시)	27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과업명칭 : 일동 구룡경로당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개요

가. 대지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일동 125번지(구룡동길 10)	
대지면적	728.6㎡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나. 건축규모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연 면 적	1,200㎡ ±5%	
층 수	지하 1층 / 지상 3층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요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경로식당,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등)	
추정공사비	3,480,000천원(부가세 포함)	
추정설계비	172,810천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다. 주요시설

구 분	층수	용 도	면적(㎡)	비고
일동 구룡경로당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등	100㎡	
	지상1층	경로당	400㎡	
	지상2층	경로식당	400㎡	
	지상3층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00㎡	
합 계			1200㎡	

※ 과업내용 : 일동 구룡경로당 공사를 위한 지반조사와 계획·중간·실시 설계용역, 건축물 해체에 대한 설계업무,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BF인증 관련 설계업무, 녹색건축 인증(일반등급)

라. 사업위치도



3. 과업기간

- 가. 착수일로부터 150일(단, 각종 인·허가, 심의, 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기간 등은 제외)
- 나. 과업수행기간 연장 또는 정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발주자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 중단 또는 과업내용 변경 되었을 경우
 - 2) 관련기관(부서) 협의, 자문, 심의, 심사, 검토 등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4) 기타 발주자 필요에 의한 경우
- 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범위

- 가. 설계도서 작성(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 ※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공사 포함

- 나.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필요시)
- 다.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각종 심의, 협의, 심사, 감사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이행
- 라.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 마.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BF 예비인증 취득, 녹색건축 인증 “일반등급” 이상
- 바. 설계 안전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우수유출 저감대책,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법령에 해당할 경우 서류작성 및 절차이행
- 사.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 준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 1) 용역수행자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안전성, 기능, 관련법규 및 규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 2)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 4)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6) 건축 협의(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협의 등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7)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른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8) 본 용역 수행 중 필요 시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및 협의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9) 본 과업의 시설물 특성상 실내의 분진 제거, 정전기 방지, 화재예방 등 시설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 흡·배기 및 냉·난방시설, 화재 시 내화시간과 피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10) 설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에 의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출근거를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 설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품(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시공 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대업무

- 1) 측량, 지반조사 및 지하매설물 조사 등 제공자료와 상이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2) 실내건축(장식) 및 화장실공사(디자인)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제출
- 3)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개최 시 자료작성 및 보고에 따른 업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
- 4)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5)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 6) 용역 완료 전까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 7)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외부 자문 시 자문에 필요한 절차 이행
- 8)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 날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제출
- 9) 기타 필요시 사례 비교조사 제출 및 본 사업 적용·반영 사항 등

다. 기타사항

- 1)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중 발주처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가)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나)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다) 우수관 및 배수시설 확인

라)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라. 보고

설계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보고 후 검토된 과업을 진행한다.

1)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며, 착수보고 시 책임기술자는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보고 :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건 조사, 관련법규 검토 등 계획설계 전 사전검토사항을 작성·보고한다.

3) 계획설계보고 : 건축물에 대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2개 이상의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작성·보고한다.

※ 설계공모의 경우 선정된 공모작에 공모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한다.

4) 중간설계보고 : 계획설계 계획안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서류를 작성·보고한다.

※ 설계자는 각종 심의,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정지 기간에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보고 : 발주처에서 제출된 납품도서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를 제작·보고한다.

6) 월별업무보고 : 설계자는 매월 첫째 주에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 제출·보고한다.(서식2)

7) 수시 보고 : 기타 발주자로부터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설계자가 설계 진행상 중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마. 성과품 납품시기

- 1) 계획설계(안) 납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중간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3) 실시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 ※ 각종 심의, 심사, 협의 등 설계도서 납품 : 발주처와 협의

바. 각종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이행

-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심의, 협의, 심사, 감사, 예비인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 2) 설계용역 계약자는 설계와 관련된 각종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자료를 작성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3)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심사, 인·허가협의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 성과의 소유

-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설계자 유의사항

- 1)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 2)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발주자 결정을 따르며, 누락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자.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구조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차. 참여기술자 변경

본 과업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에는 평가당시 평가기준(배점기준) 동등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카. 납품 이후 설계 하자 시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약 불가, 구조적인 모순, 관계법규 저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법령 등의 적용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기타 관련법규, 훈령, 예규, 고시, 조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2)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대가의 조정

가. 용역비 변경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역비 변경 및 정산하여야 한다.

(단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제2장 분야별 설계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설계 방향

-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3) 관리운영이 쉽고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 및 환경친화형으로 설계한다.
- 4)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일반등급”,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이상” 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행정절차이행 포함)하여야 한다.

- 5) 본부지 현황측량, 지질조사, 각종 심의, 위원회, 협의, 심사, 감사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설계자 부담사항임(단,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별도 납부함.)
- 6)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1) 창호, 내외벽, 스크린,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2)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4) 이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첨단시설로 설계

- 1)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비와 구조로 구상되어야 한다.
-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진국형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라.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1) 조경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등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법,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법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사무 및 전시실 용도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 1) 시공자재는 지역의 우수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 환경표지인증, GR마크인증 등의 친환경제품인증을 취득한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다만,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항

가. 부지특성 고려사항

- 1) 시가지경관지구(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준수.
- 2) 보행자 측면에서 주변도로는 경로당 일대를 포함하여 대체로 6~8m의 보차혼용도로가 많아 노인들이 보행 및 전동휠체어로 경로당 이용시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 따라서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시행 권장

나. 건축계획 기본방향

1) 건축물 배치계획

- ① 부지 형태와 접도조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아이디어 유도

2) 내부 동선계획

- ① 화재나 재난시를 대비한 단순하고 명쾌한 내부동선 계획 수립
- ② 비상 시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한 대기공간(발코니 등) 계획 권장

3) 외부 동선계획

- ① 차량 동선과 보행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② 경로당 이용자의 주 동선과 서비스 동선(주방 식자재, 공동작업장 물품)은 분리하여 계획

4) 외부 공간계획

- ① 건축물 배치가 어려운 대지 북측 모서리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외부활동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 ②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구조 적용 검토

5) 공간 및 시설계획

- ① 층별 시설 구성을 미리 정하여 제시하기보다 시설별 조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공간계획 유도
- ② 수요에 적합한 시설 조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소요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③ 경로당 영역은 노인의 접근이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용자 협의를 통해 실내 가구 및 설비 설치 협의 필요
- ④ 교육 및 문화활동 영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 활요이 가능하도록 가변형으로 계획하고,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은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설계조건 제시
- 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은 작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장비 이동이 편리하도록 동선 계획 수립하고, 작업장 내 노인들을 위한 실내 휴게공간 확보 필요

- ⑥ 편의시설 영역(경로식당)은 식당 1일 이용자수, 최대 수용인원 및 회전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감염병 예방을 고려하여 배식 및 퇴식 동선 분리 필요. 또한 주방, 식자재창고, 직원휴게실(탈의실 포함) 등 필요한 부속실은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조리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 확보 권장

6) 기타 특수조건

- ①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있어 공간이용안전 및 범죄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요망
- ② 외부 공간 및 외부 시설물 계획 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진흥 가이드라인’ 참고

3.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가. 토질조사 및 시험

- 1)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사토장 후보지를 결정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2) 토질조사 시추지점을 평면도상에 표고와 함께 기입하여야 하며, 시추는 구조물 실시설계에 필요한 곳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되 기본적으로 2개소 이상을 보링 한다.
- 3) 토질조사 시추점도는 연암, 보통암 또는 경암까지 실시하여 기반 암층을 확인하도록 하며, 표준관입 시험을 시행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는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록한다.
- 4) 지하 터파기 등에 의해 지하수위 강하 발생에 따른 주변 구조물 영향을 파악하여 침하, 균열,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5) 토질조사 시추결과 주상도를 작성하고, 토질에 대한 종류와 성분 분석 및 시추작업사진, 토질조사 시료 및 코아는 주상도와 부합되게 관찰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6) 연약지반 성토부는 성토재료 및 기초지반에 대한 소요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7) 암반 시추 시 암반선의 종류, 풍화의 정도, 균열의 간격, 균열의 구조 방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실시설계와 합리적인 사업비산정,

구조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기술적 비교검토 후 가장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측량

- 1) 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은 인근 삼각점으로부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골고루 확정하여야 한다.
- 2) 현황측량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 3)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해야 한다.
- 4) 평면 측정은 도로 및 주변 건축물 구조물 등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축척은 1/500(또는 1/600, 1/1,200, 발주청 협의)으로 기입한다.
- 5) 지적도는 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기본으로 한다.

다. 지장물 조사

- 1) 지장물 조사는 계획선 내의 토지, 도로, 가옥, 공작물, 통신 및 송배전 시설 등 일체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들의 관련 공부를 기준으로 구 물건을 현지답사 확인하여 건수별로 조사를 시행하며,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 하여야 한다.
- 2) 지장물도에는 건축물, 공공시설, 하수도, 가로수, 한전, 통신주 및 지하선로 가드레일, 상수도, 교통표지판, 지하철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구조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별도 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 3) 지장물건조서는 물건별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원본에 첨부하여 납품하고 인·허가 서류에 필요한 국·공유지용지조서, 도면 등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분야

가. 건축 기본방향

- 1) 건축물은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며,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등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재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 2) 건축물 이용 효율 측면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 형태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한다.

- 3) 동선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용자별 보행·차량 동선을 분리하며,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4)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커튼월 설계는 지양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5) 건축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고려사항

- 1) 제반시설 등은 안산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준수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에 따른 설비는 건축물의 디자인에 맞춰 적용한다.
- 3)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해로부터 안전과 원활한 피난이 되도록 하며, 향후 수요증가를 반영한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한다.
- 5) 주변의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배치계획

-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 2)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 4)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5)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 6)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 7)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 8) 다목적실 등 용도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주민의 수요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변형 가능한 공간을 설계한다.
- 9) 도로와 인도, 사업부지와 대지 레벨차를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 10) 주변지형과 적절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일사(채광), 통풍, 조망을 확보하여 한다.

라. 평면계획

- 1) 각 실에 기능별 독립성을 부여하되, 상호 긴밀한 연결성을 갖도록 내·외부 동선을 최소화하여 실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한다.
- 3) 능률적, 경제적, 실용적인 시설로 계획하고 준공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쉽도록 계획한다.
- 4)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 5)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6)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7)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마. 단면계획

-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 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바. 주차 및 동선계획

-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규격을 적용한다.
(일반형 2.5m×5.0m, 확장형 2.6m×5.2m)
- 3)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한정된 예산안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계획하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상 진출입 주차 램프의 폭을 3.5m 이상만 확보하면 되므로 양방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램프 등 주차 동선 계획시 지하주차장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양방교행 가능폭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에서 지하 주차장 이용현황(여유대수)을 알 수 있는 표시판 등의 설치를 한다
- 4)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한다.
- 5)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 6)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사. 구조계획

- 1)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및 기타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2) 향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 및 형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3)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 구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4) 건축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 가)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높이 결정
 - (1) 냉난방 열손실, 층높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 단면 설계방법 등 검토
 - 나) 구조에 있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 (1)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부재단면 적정여부 검토
 - (2) 시공 및 구조계산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 (3)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 다)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택 및 설계하여야 한다.
- (1) 적정한 지내력 확보
 - (2)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결정

5. 설비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5)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 6)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7)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냉·난방 공조 설비

- 1)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 2) 기계실 장비 및 기기는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한다.
- 3) 전관에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사무실에서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위생설비

- 1)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한다.
- 2)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소방설비

- 1)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2)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바. 환기설비

- 1)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2)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6. 토목·조경분야

가. 토목분야

- 1) 건축물 부대토공사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지하구조물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검토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고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 2)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3)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토목 공종, 장비 및 자재 선정 등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4)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및 수압, 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조경분야

- 1)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 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2)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 3)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7. 전기 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5)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절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 6) 사무실 및 디지털자료실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 7)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에너지, 열원 설비

- 1)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2)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한다.
-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되도록 설계한다.

다. 수변전, 동력 및 전열설비

- 1)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동률을 적용한다.
-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3)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4)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여 콘센트를 설치한다.

8. 통신분야

가. 일반 고려사항

- 1)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 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 6)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7) 최근 개정된 법령 중 관련법규(정보통신, 방송, 소방 등)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가. 일반사항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나. 작성지침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다.
- 2) 예정공정표는 네트워크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설계내역서 작성은 조달청 전산표준 호환 텍스트파일(확장자*.TXT) 및 Microsoft Excel (2002)과 호환되도록 작성하며, 일위대가는 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여 작성한다.

- 4) 단가 적용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개 이상 조사하여 단가조사표를 작성한 후 최저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단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견적을 2개소 이상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 5)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 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는 발주청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분리 작성 하여야 한다.
- 6)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작성하고,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각 공사분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별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기술한다.
- 7) 기타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제” 라 한다.)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제

나. 책임기술자 선임제(서식3) [기술경력증명서 1부 첨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투입계획서 (총괄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소속(업체명), 업무내용(분야),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등급, 자격증, 참여예상기간 등 기재한다.)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이어야 함.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서식4)

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사. 과업지시서

아. 하도급 예정현황

자. 보안각서(서식1)

차. 손해보험가입증서 또는 공제증서(용역 준공 시 제출가능)

카.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일반사항

-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 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 2)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초조사 및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목 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보고서	A4	2	부	건축계획서, 법규검토서, 개략공사비포함
2	지반조사보고서	A4	2	부	
3	현황측량보고서	A3	2	부	
4	지장물건조사도	A3	2	부	도면첨부
5	조감도	A3	2	조	개략적인 3차원 이미지
6	설계도면	A3	2	부	배치도(주차, 포장, 식재 포함),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 포함

주) 1. 납품도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목 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2	설계도면	A4	3	부	배치도, 주차계획도, 구조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 분야별 계통도 및 평면도 포함
3	색채계획서	A4	3	부	
4	조감도	A3	2	조	
5	USB메모리	8G이상	1	개	기초조사 납품도서 포함

주) 1. 납품도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 : 공사개요, 건축물 규모, 분야별 설계설명서(기계, 전기, 통신계획개요서 포함), 개략공사비, 법규검토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라.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목 록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종합보고서	A4	3	부	
2	설계설명서	A4	3	부	
3	설계도면	A3	5	부	
4	계산서	A4	5	부	
5	내역서	A4	5	부	
6	일위대가	A4	5	부	
7	단가산출서	A4	5	부	견적서 포함
8	수량산출서	A4	5	부	
9	주요자재결정서	A4	5	부	관급자재 포함
10	주요자재사양서	A4	5	부	관급자재 포함
11	시방서(표준, 특별)	A4	5	부	
12	조감도	A2	2	조	액자 포함
13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14	USB메모리	8G 이상	3	개	
15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필요시

- 주) 1. 종합보고서에는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 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수량 등은 발주자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별도 협의한다.

[서식 1] 보안각서

보안각서

1. 용역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준공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2호(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건설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청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3. . .

주소 :
생년월일 :
기술분야 :
성명 :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2] 월간업무보고

월 간 업 무 보 고

용역개요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00월 용역업무보고(공정률 00%)

구분	금월 추진 사항	익월 추진 예정 사항	비고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책임기술자 :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3. . .
4. 착수일자 : 2023. . .
5. 준공예정일 : 2023. . .

- 아 래 -

- 가. 성 명 :
- 나. 주 소 :
- 다. 주민등록번호 :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3.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안 산 시 장 귀하

[서식 4] 설계 예정공정표

설계 예정공정표(예시)

구 분	착수일로부터 개월							비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 현황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2. 계획설계								
3. 중간설계								
4. 실시설계								
5. 각종 심의, 협의 등 (경관, 기술자문, 건축협의, 각종 인증, 심사, 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은 용역정지 또는 기간연장
6. 기 타								